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!

다시뛰는 공정도시 서울

서 울 특 별 시

서울시 홈페이지 seoul.go.kr

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

(경유)

제목 특수판매업(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) 방역지침 안내

1.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, 중대본에서는 **2022.4.18(월)부터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완화**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2. 이에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대상시설 : 서울특별별시 내 특수판매업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, 미신고·미등록 포함)집합·판매 영업장소

나. 기 간 : **2022년 4월 18일(월) 0시 ~ 별도 안내시까지**

다. 주요내용 : **실내취식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**

※ 실내취식 금지 조치는 2022.4.25(월) 0시부터 해제

붙임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 1부. 끝.

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서 울 특 별 시 장

주무관 **김세현** 민생대책팀장 **조진숙** 공정경제담당관 04/18 **이병욱**

협조자

시행 공정경제담당관-21839 ((2022. 4. 19.)) 접수 ( )

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/ http://www.seoul.go.kr

전화 02)2133-5371 /전송 02)768-8852 / sehyun97@seoul.go.kr / 부분공개(7)

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

1 적용 기간

○ 2022년 4월 18일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<경과규정 등>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6350(2022.4.1.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4.18.(월) 05시까지 유효
-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'실내 취식 금지' 조치는 2022.4.25.(월) 0시부터 해제

2 적용 대상_지역/시설

○ (대상_지역) 전국 17개 시·도

<수도권>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<수도권 외 지역>
-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○ (대상_시설) 다중이용시설 등 33종

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(33종)
<취식 금지시설_18종>
▲노래(코인)연습장 ▲실내체육시설 ▲목욕장업 ▲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 ▲멀티방 ▲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▲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오락실 ▲전시회·박람회 ▲이미용업 ▲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▲학원 등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영화관·공연장 ▲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도서관 ▲상점·마트·백화점 ▲종교시설
<취식 가능시설_13종>
▲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 ▲식당·카페 ▲PC방 ▲파티룸 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돌잔치 ▲유원시설 ▲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▲실외체육시설 ▲숙박시설 ▲키즈카페 ▲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콜센터 ▲물류센터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위 의무적용 시설과 자유업 기타 미등록, 무허가 시설 등 유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

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3 방역 수칙

○ **(실내 취식 등)** 아래 대상시설에서의 **▲실내취식 금지** 및 **▲마스크 착용 의무**를 제외한 **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***

- 기타 환기, 소독, 사람 간 거리두기(1m) 등 **권고사항**은 **'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'** 참고

***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**

****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**

<실내 취식 관련 준수 의무사항>

★ 대상시설(18종) **▲노래(코인)연습장 ▲실내체육시설* ▲목욕장업 ▲경마장·경륜장·경정장/카지노(내국인)** **▲멀티방 ▲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** ▲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오락실 ▲이미용업** **▲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영화관·공연장** **▲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도서관 ▲종교시설**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○(이용자) -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
▲전시회·박람회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<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> -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·시식 공간 마련 - 시음·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-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(좌석 미배치) -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안내 -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(강력권고) - 이용 후 즉시 소독·폐기물 수거조치	○(이용자) -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<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> - 칸막이 내 시식·시음하기 - 시식·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-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-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(강력권고)
▲학원 등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○(이용자) -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

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<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> -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,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및 안내	<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> -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에서 식사는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
▲상점·마트·백화점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매장 내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○(이용자) - 매장 내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
- 시식·시음·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금지 및 안내	- 시식·시음·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이용 금지
<공통사항> ■ 시설 내 식당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등 별도공간(푸드존 등)이 있는 경우, 해당 공간 내에서만 취식 가능 **<공통사항 외>** ■ 종교시설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각각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 제공 금지 포함 *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무관 ** 고척스카이돔 포함	

4 법적 근거

○ **(완화 시 절차)** 당해 지자체가 속한 ①**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**와 ②**중수본 사전협의** 및 ③**중대본 사전보고**를 **모두** 거친 후 적용

4 법적 근거_[붙임1] 확인

5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[붙임2] 확인

① (중대본)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2호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⇩

② (지자체) 관내 **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,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⇩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⇩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 위반**으로 확진자 발생 시 **손해배상 청구**

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6 준수사항 등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•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•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과태료 부과
→ 경고, 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

•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

- 관내 사업장별 **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**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- 해당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-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 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**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붙임1 법적 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의2, 제2호의4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**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한다.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**1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한다. 1. **제49조제1항제2호의2** 또는 **제2호의3**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**이용자** 2. **제49조제1항제2호의4**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**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**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붙임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에 따른 경고, 운영중단 등 **행정처분 세부기준**

<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일부 발췌) >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,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에 따른 관리자·운영자·이용자에 대한 **과태료 부과 기준**

<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3조 별표3(일부 발췌)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아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**관리자·운영자**가 **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**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2항	50	100	200
자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**이용자**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**운송수단의 이용자가**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4항제1호	10	10	
차.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4항제2호	10	10	

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